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75
----------	------

2024년 6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강석주 의원 (찬성 24인)
-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6월 1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강석주 의원)

1. 제안이유

- 지난 1월 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7월 3일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모범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 일부 조문순서를 정비하여 조례형식(체제)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센터 신설(안 제10조 신설)
- 나. 모범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표창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표창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 및 조문 순서 등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음.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u> (생략)	<u>제4조</u> (현행 제3조와 같음)
<u>제4조</u> (생략)	<u>제3조</u> (현행 제4조와 같음)
<u>제5조</u> ~ <u>제5조의4</u> (생략)	<u>제11조</u> ~ <u>제11조의4</u> (현행 제5조부터 제5조의4까지와 같음)
<u><신설></u>	<u>제12조(표창) 시장은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
<u>제6조</u> (생략)	<u>제9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u><신설></u>	<u>제10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u>

현행	개정안
<p>제7조·제8조 (생략)</p> <p>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p>	<p>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p>③ 시장은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제7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p> <p>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p>

현행	개정안
<p>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사회복지사 등의 <u>안전과 인권 보호</u>를 위한 사업</p> <p><u><신설></u></p> <p>6. (생략)</p> <p>② (생략)</p> <p><u>제10조</u> (생략)</p> <p><u>제11조</u> (생략)</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안전보장을</u> -----</p> <p>6. <u>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5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p> <p><u>제13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안 제 10조 신설)

- 사회복지시설의 확대에 따라 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종사자의 처우는 타 산업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실정임. 사회복지현장의 낙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이 모색되었으나 종사자의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¹⁾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간한 『2022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가운데 33.5%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서적 폭력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장 내 동료, 상사, 부하직원이나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의 대응 방법은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기거나(42.2%)” ,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넘겼다(19.6%)” 순으로 나타남.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2022)에서 실시한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신적 괴롭힘’ 을 1회 이상 경험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1.3%로 나타나고 있음.
- 관련하여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입법 동향에서 지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24.1.2. 조문 신설, ‘24. 7. 3. 시행 예정)²⁾.

1) 김유경 외(2020).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7.3.>

-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수행기관을 공모 중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425백만원으로 추계한 바 있음.³⁾
- 현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권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노무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표창 수여 (안 제12조 신설) 및 조문 정비

- 개정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창 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수여되는 것으로서 규정에 문제점은 없음. 해당 조항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문 순서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음.
-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에서는 자치법규의 일반적 체계로 ① 총칙규정 ② 본칙규정 ③ 부칙규정 순으로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자치법규의 입법취지, 내용, 조문 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도

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2024.5.).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운영 위탁기관 공모계획”.

록 하고 있음.

〈표〉 신·구 조례 조문순서 비교

기존 조례	수정 조례(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 (적용대상)
제5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제7조(실태조사)
제5조의4(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제8조(실태조사)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11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의3(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제11조의4(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12조(표창)
제11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 해당 개정안은 조문의 순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다. 집행기관 의견 : 원안 가결

- 집행기관에서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원안 가결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종합의견

-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제고와 관련이 있음. 즉,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가 주 업무인 사회복지사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이용자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⁴⁾
-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음('24.1.2. 조문신설, '24.7.3. 시행 예정).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순서의 정비를 통해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표창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4) 조상미·정희수·한예선.(2020).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조건: 무엇이 변화되고 그 경험은 어떠한가?. *한국사회복지학*, 72(3), 85-107.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7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강석주 의원(1명)

찬 성 자: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유만희,
유정인, 이상욱, 장태용,
허 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지난 1월 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7월 3일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모범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 일부 조문순서를 정비하여 조례형식(체제)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센터 신설(안 제10조 신설)
- 나. 모범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표창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5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9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10조를 제5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시장은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9조) 제1항제5호 중 “안전과 인권보호를”을 “안전보장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u> (생략)	<u>제4조</u> (현행 제3조와 같음)
<u>제4조</u> (생략)	<u>제3조</u> (현행 제4조와 같음)
<u>제5조 ~ 제5조의4</u> (생략)	<u>제11조 ~ 제11조의4</u> (현행 제5조 부터 제5조의4까지와 같음)
<u><신설></u>	<u>제12조(표창) 시장은 모범 사회복지 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 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
<u>제6조</u> (생략)	<u>제9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u><신설></u>	<u>제10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센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 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 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 를 위한 교육 및 홍보</u>

제7조 · 제8조 (생략)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6. (생략)

② (생략)

제10조 (생략)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 제7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안전보장을

6.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략)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분	관련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	별도 비용수반 없음 ¹⁾
2	제10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	권익지원센터 설치비용이 발생하나 관련부서 문의결과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3	제12조(표창)	△	표창 제작 소요금액 ²⁾ 발생할 수 있으나 소액이고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동 개정안 제10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 따라 센터 설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서울시 복지정책실) 확인결과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 다만 현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부설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센터를 운영(붙임 참고)하고 있고 장기요양요원 중 사회복지사 일부(5,439명³⁾)가 포함됨에 따라 일부 기시행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전부⁴⁾를 포함하지 않아 별도의 센터 설치를 고려할 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장기요양요원⁵⁾ 현황

(단위 : 명)

구분	세부구분	인원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의사 / 간호요원(간호사+간호조무사) / 영양사 / 기타	146,612

○ 동 개정안 제12조(표창)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관련부서(서울시 복지정책실) 확인결과 표창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1) 동 개정안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은 현행 같은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제1항제5호를 2개로 나누고 ‘인권보호’를 ‘권익보호’로 용어 변경을 한 것으로 별도의 재정소요는 없어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사업시행 시 연례반복적 소요비용으로 표창대상 수에 따라 향후 예산(사무관리비)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함
- 다만 관련부서 확인결과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합리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3) 서울시 관련부서 현황자료

4) 115,673명, 2023년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5) 장기요양요원 의미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포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붙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부설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센터(안 제10조 관련)

□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센터(2024. 3월 발족식 개최)

○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센터 기능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

▶ 권익지원센터, 이런 일을 합니다



•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존중받도록

종사자 인권보호 사업 신설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 라인과 종사자 대상 교육 제공, 이용자를 위한 종사자 인권보호 교육



•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안전하도록

성희롱, 산업재해 예방 사업 확대

장기요양현장 맞춤형 기관 방문 성희롱 예방교육과 산업재해 예방교육 광범위 시행, 예방 매뉴얼 개발 및 확산



• 권익보호의 가장 중요한 환경, 장기요양기관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컨설팅 및 기관운영자 교육 신설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사노무 컨설팅, 성희롱 예방 체계 컨설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및 관련 기관운영자 교육



• 권익지원의 기본

종사자를 위한 권익지원 교육 시행과 자료 개발

권리찾기수첩 및 상담사례집 발간, 종사자 노동법 교육, 인권 교육

자료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